



1. 미국 우회·회피조사 및 범위판정제도 연계 구조와 시사점
2.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 기준의 적용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



# 미국 우회·회피조사 및 범위판정제도 연계 구조와 시사점



구준희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 1. 들어가면서

미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회조사·범위판정·회피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회 시도를 조사·단속하지 않으면 반덤핑·상계관세 대상 국가의 물품이 제3국으로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입되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sup>

우회조사·범위판정·회피조사는 각각 독립적인 제도이지만, 사안에 따라 서로 연계되거나 병합되어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조사 제도의 개요와 절차, 상호 연계·병합 구조 및 관련 사례를 살펴본 뒤, 이러한 제도가 대미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상무부는 우회조사를 통해 중국산 원재료(알루미늄 포일 및 시트)로 생산한 우리나라 수출 물품(알루미늄 포일)이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우회하였다고 판정한 바 있다(23.11.27)

## 2. 미국의 반덤핑 우회 관련 조사제도

### (1) 미국 상무부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는 관세법 제781조(19 U.S.C. § 1677j) 및 시행 규정 (19 CFR § 351.226)에 근거하여 상무부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회 유형은 관세법 제781조(19 U.S.C. § 1677j)에 근거하여 4가지(경미한 변형, 후기 개발 물품, 제3국 완성·조립, 미국 내 완성·조립)으로 분류된다<sup>2)</sup>.

우회조사는 상무부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으로 개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신청할 경우 상무부는 조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sup>3)</sup>.

조사가 개시되면 상무부는 필요에 따라 조사 대상 기업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사실관계 및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조사 개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의견서를 반박한 상대방에게 재반박할 수 있다.

상무부는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예비 판정(우회 긍정/부정)을 내려야 하며<sup>4)</sup>, 우회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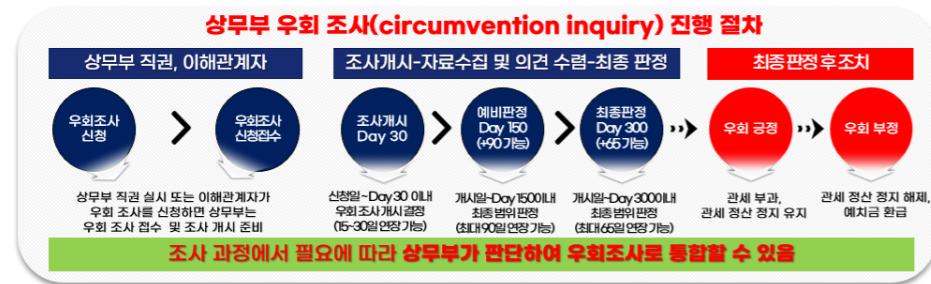
2) 경미한 변형은 특정 물품을 반덤핑·상계관세 대상 물품과 유사하게 변형하는 것이고, 후기 개발 물품은 최초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이후 개발된 유사 물품을 의미하며, 제3국/미국내 완성·조립은 반덤핑·상계관세 대상 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 또는 미국에서 완성·조립하여 제3국산 물품 또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물품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유형이다.

3) 상무부 우회조사 가이드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Circumvention Inquiry Guide Section IV Interested Party Status).  
 - 미국 내 동종 국내 물품(domestic like product)의 제조업자, 생산자 또는 도매업자  
 - 미국 내에서 동종 국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도매에 종사하는 산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certified union) 또는 근로자 집단  
 - 구성원의 과반수가 미국 내에서 동종 국내 물품을 제조, 생산 또는 도매하는 무역협회(trade association) 또는 기업협회(business association), 구성원의 과반수가 동종 국내 물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로 구성된 단체  
 - 「관세법(the Act)」 제771조 (9)항의 의미에 해당하는 그 밖의 모든 이해관계자(세부내용은 해당 법령 참조)

4) 필요할 경우 예비 판정 기한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다<sup>5)</sup>.

[그림 1] 미국 상무부 우회조사 진행 절차



자료 : 미국 CBP EAPA 홈페이지(www.cbp.gov/trade/eapa) 내용 재구성

## (2) 미국 CBP EAPA 회피조사(evasion)

미국 CBP는 2016년에 발효된 무역촉진 및 집행법(TFTEA) 제421조 무역 집행 및 보호법(Enforce and Protect Act, EAPA)에 근거하여 회피(evasion)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sup>6)</sup>.

회피조사는 미국 수입 기업이 특정 물품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환적(transshipment), 원산지 허위 신고, 물품 가격 저가 신고, 품목 오분류 등의 방법으로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evasion)한다고 의심되는 경우<sup>8)</sup>, 이를 조사·단속하는 활동이며, CBP 직권, 이해관계자 신청 또는 유관기관의 요청으로 개시할 수 있다<sup>9)</sup>.

CBP는 회피조사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 후 90일 이내에 중간 조치(interim measure) 부과를 결정한다<sup>10)</sup>.

- 5) 필요할 경우 판정 기한을 최대 6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6) EAPA(The Enforce and Protect Act) : A Primer on the Administrative CBP Process and Summary of Judicial Decisions(Michael E. Roll, Ashley Akers)
- 7) 2016년에 발효된 무역촉진 및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TFTEA)에 근거하여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에 회피조사(evasion) 권한을 부여하였다.
- 8) 환적은 물품을 제3국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행위이고, 이는 미국 통관 시 원산지 허위 신고로 이어진다. 그 외 수입 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거나 품목을 고의로 오분류하여 관세 납부 금액을 적게 산정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통관 서류를 위조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관계없는 물품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이 있다.
- 9) CBP 회피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19 U.S.C. § 1517 Procedures for investigating claims of evas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a)(6))
  - '대상 상품을 생산하는 해외 기업', '미국 수입 기업', 미국 내 유사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또는 그 산업을 대표하는 노동자 단체, 그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
- 10) 회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정산 정지, 정상적인 관세율에 해당하는 현금 예치 등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중간 조치 대상 기업은 중간 조치일로부터 200일 이내에 회피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간 조치에 대한 서면 주장(written arguments)은 중간 조치일로부터 2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피 판정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발표하여야 한다<sup>11)</sup>.

조사 대상 기업이 회피 판정에 불복 시 최종 행정 재심(Final Administrative Determination)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림 2] 미국 CBP 회피조사 진행 절차



자료 : 미국 CBP EAPA 홈페이지(www.cbp.gov/trade/eapa) 내용 재구성

## (3) 미국 상무부 범위판정제도(Scope ruling)<sup>12)</sup>

상무부는 우회(circumvention) 조사 외에 조사 대상 물품의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범위판정제도(Scope rulings)를 운영하고 있다.

11) 필요할 경우 판정일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2) 범위판정은 19 CFR § 351.225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대상 물품의 범위에 HS 코드, 물품의 규격·설명 등을 명시하는데, 이해관계자(수입자, 수출자, 경쟁사 등)가 상무부에게 특정 물품이 해당 제재 대상 물품에 포함되는지를 판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sup>13)14)</sup>. 동 제도는 이해관계자 신청을 포함하여 상무부 직권, 관련 부처(CBP)의 요청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상무부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범위판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범위판정을 위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 후 120일 이내에 범위판정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sup>15)</sup>.

[그림 4] 미국 상무부 범위판정 진행 절차



자료 : 19 CFR § 351.225 Scope rulings



- 13) 상무부 범위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19 CFR § 351.102(b)(29))
  - 조사 대상 물품 해외 생산 기업 및 수출자, 미국 수입 기업
  - 구성원 대다수가 생산자·수출자·수입자로 구성된 무역 또는 기업 협회
  - 조사 대상 물품을 생산·수출한 국가 정부
  - 미국 내에서 조사 대상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및 도매업자
  - 미국 내에서 조사 대상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도매하는 산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 미국 내에서 조사 대상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도매하는 회원들이 다수로 구성된 무역 협회 또는 기업 협회
- 14) 이해관계자 등이 범위판정을 신청할 경우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관련 전자 행정 시스템(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Electronic Service System, ACCESS)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15)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표일을 최대 180일(총 30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CBP의 대상물품조사(CMR) 신청에 따른 상무부의 범위판정 절차는 2016년 CBP 회피조사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2020년까지 근거 규정 없이 진행되었으며, 규정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1년에 상무부가 근거 규정(19 CFR § 351.227)을 마련하였다.

[표 1] 상무부 범위판정 비교

항목	19 CFR §351.225 (Scope rulings)	19 CFR §351.227 (Covered merchandise referral)
목적	특정 물품이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정함	CBP가 반덤핑·상계관세 적용범위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상무부에 범위판정 요청함
신청 주체	상무부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 신청	CBP
범위판정 개시 결정 기한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기한 내 범위판정 결정 없으면 신청서 수락 및 조사 개시로 간주함	CBP가 요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시 여부 결정
최종 판정 기한	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	
연장 가능 기간	최대 180일 연장(총 300일 소요)	최대 150일 연장(총 270일 소요)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개시 후 30일 이내 의견 제출 (14일 이내 반박, 7일 이내 재반박 가능)	
원산지 결정	상무부 독자적으로 결정 가능, CBP 판정 등에 구속되지 않음	
범위판정효력	(범위 포함 확정) 조사 대상 물품 통관 보류, 정상적인 관세율 부과 및 이에 근거한 현금 예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통관 보류 및 관세 정산 정지 종료, 기업이 정상적인 관세율에 근거하여 예치한 현금 환불 실시	

자료 : 19 CFR §351.225 Scope rulings, 19 CFR §351.227 Covered merchandise referral

상무부는 조사 개시 후 120일 이내에 대상물품조사(CMR) 신청에 따른 범위판정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sup>16)</sup>. 상무부는 상황에 따라 대상물품조사(CMR) 신청에 따른 범위판정을 우회조사와 통합하여 진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sup>17)18)</sup>.

- 16)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150일(총 27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17) 19 CFR §351.227 (b)(1)(ii)
- 18) 19 CFR §351.227 (d)(5)(ii)

[그림 5] 미국 CBP 대상물품조사(CMR) 신청 및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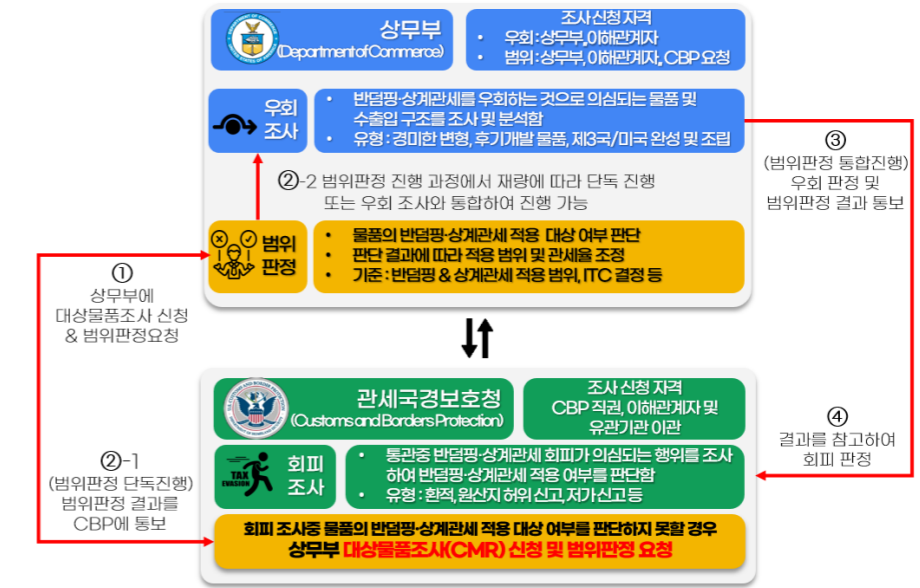
자료 : 19 CFR § 351.227 Covered merchandise referral

### 3. 우회 관련 조사의 연계·병합 관계

우회·회피조사, 범위판정 등은 제도상으로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지만,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CBP가 회피조사 진행중 특정 물품이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상무부에 범위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CBP가 요청한 범위판정을 우회조사와 병합하여 최종 판정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상호 연계·병합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표 2] 미국 우회 관련 조사 유형과 연계·병합구조

수행기관	유형	내용
상무부	우회조사 (circumv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 자격 : 상무부 직권, 이해관계자 신고</li> <li>반덤핑·상계관세 적용 대상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 대신 다른 물품을 경미하게 변형하거나,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원재료를 미국·제3국으로 반입하여 유사한 물품으로 완성·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유통하는 행위를 조사함</li> </ul>
	범위판정 (scope rul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 자격 : 상무부 직권, 이해관계자 신고, 관세국경보호청(CBP)</li> <li>특정 물품이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 범위를 조정하며, 조정된 범위를 진행중인 우회·회피조사 등에 반영함</li> </ul>
CBP	회피조사 (eva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 자격 : CBP 직권, 이해관계자 신고, 연방기관 이관</li> <li>통관 과정에서 특정 물품의 반덤핑·상계관세 회피가 의심되는 행위(환적, 원산지 허위신고, 서류 위조 등)를 조사함</li> <li><b>[대상물품조사(CMR)]</b> CBP가 회피조사 과정에서 특정 물품의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여 상무부에 범위판정을 요청하는 절차임</li> </ul>



자료 : 미국 상무부 및 CBP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4. 미국 우회·회피조사 및 범위판정제도 연계·병합 사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우회조사, 회피조사 및 범위판정제도를 이용하여 우회 수출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황에 따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연계 구조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EAPA 7184(다이아몬드 톱날), EAPA 7950(글루탐산나트륨)이다.

두 사례 모두 CBP 회피조사로 시작한 사례였으나, 조사 대상 물품이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상무부에 범위판정을 요청하였으며, 상무부는 범위판정을 진행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우회조사와 병합하여 진행하였다.



### 가. EAPA 7184(다이아몬드 톱날)

본 사례는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 부품(코어, 세그먼트)을 태국에서 레이저로 용접하여 다이아몬드 톱날로 생산한 후, 이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태국산으로 신고한 행위가 반덤핑 관세<sup>19)</sup>를 회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다.

2017년 3월, CBP는 해당 태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을 수입하는 미국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회피조사를 개시하였다. 회피조사 결과, CBP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 서류, 관세 정산(liquidation) 정지 등 중간 조치(interim measure)를 부과하였다.

중간 조치 부과 이후, CBP는 태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이 반덤핑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지 못하여, 상무부에 대상물품조사(CMR)를 신청하고 범위판정을 요청하였다.

상무부는 별도의 범위판정 절차를 거쳐 반덤핑 관세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었으나, 우회조사 신청이 접수된 상황을 고려하여 범위판정을 우회조사와 통합하였다<sup>20)21)</sup>.



19) 과거 반덤핑 관세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물품은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sawblade)이다.  
 20)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례(Slip Op. 25-87), 17p  
 21)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ice of Covered Merchandise Referral(FR Doc No : 2018-04391, 83 FR 9280)

상무부는 우회조사에서 중국산 다이아몬드 톱날 코어(core)와 세그먼트(segments)를 태국에서 레이저로 용접하여 다이아몬드 톱날로 생산한 후 미국에 태국산으로 수출한 행위가 우회(circumvention)라고 최종적으로 판정하였다.

상무부는 태국 내 레이저 용접 공정 도입에 필요한 투자 수준, 연구개발 수준 및 설비 규모가 중국 내 다이아몬드 톱날 생산 공정 대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았다. 또한 태국 내 레이저 용접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톱날 전체 가치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았다<sup>22)</sup>.

이후 상무부는 태국산 다이아몬드 톱날이 반덤핑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CBP에 회신하였으며<sup>23)</sup>, CBP는 본 사례를 최종적으로 회피로 판정하였다<sup>24)</sup>.

**[표 3] EAPA 7184(다이아몬드 톱날) 사례 개요**

항목	내용
회피조사 사건번호	EAPA 7184
반덤핑 사건번호	A-570-900
반덤핑 관세 적용 범위 <sup>25)</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이아몬드 세그먼트 방식의 완성·반완성 원형 톱날 및 부품(규격, 크기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어(core)는 홈(slot) 있는 원형 강판, 비강철판에 부착 상관 X, 합금강으로 생산됨</li> <li>- 세그먼트(segment)는 다이아몬드 + 금속분말(철, 코발트, 니켈, 텅스텐 카바이드 등) 가열·압착하여 고체 성형한 것</li> </ul> </li> <li>•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지·전기도금으로 다이아몬드를 코어에 직접 부착한 톱날(세그먼트 없음)</li> <li>- 두께 0.025인치 미만 또는 1.1인치 초과 톱날·코어</li> <li>- 非 다이아몬드 절삭날을 가진 원형 강판</li> <li>- 록웰 C 경도 25 미만 톱날 코어</li> <li>- 메쉬(mesh) 크기 번호 240 초과(ex-250, 260) 다이아몬드 톱날·세그먼트</li> </ul> </li> </ul>
조사대상물품	태국산으로 수입된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sawblade)
HS 코드	8202.39(소매용 세트 구성 시 8206.00)

22)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 for the Final Determination of the Anti-Circumvention Inquiry(FR Doc No : 2019-15084, 84 FR 33920)  
 23)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례(Slip Op. 21-151) 8p  
 24) CIT Finds the EAPA Process Does Not Violate Due Process Rights(Barnes/Richardson global trade law, 2021.11.09)  
 25) Diamond Sawblades and Parts Thereof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Antidumping Duty Orders(FR Doc No : E9-26680, 74 FR 5715)

항목	내용	
조사타임라인	17.02.24.	CBP, EAPA 회피조사 접수
	17.03.22.	CBP, EAPA 회피조사 개시
	17.06.21.	CBP, 태국 현지 공장 실사
	17.06.23.	CBP, 중간 조치(interim measure) 부과
	17.08.09.	상무부, 우회조사 신청 접수
	17.11.21.	CBP, 상무부에 대상물품조사(CMR) 신청 및 범위판정 요청
	17.12.01.	상무부, 우회조사 개시
	18.03.05.	상무부, 연방 관보(Federal Notice)에 범위판정 요청 접수, 우회조사 등 통합 가능성 등을 알리고 범위판정을 우회조사와 통합하여 진행함
	18.11.15.	상무부, 예비 우회 판정
	19.07.16.	상무부, 최종 우회 판정 및 CBP에 범위판정 결과 통보
	19.09.17.	CBP, 최종 회피 판정

자료 : 미국 상무부 ACCESS(access.trade.gov), CBP EAPA(cbp.gov/trade/eapa)

#### 나. EAPA 7950(글루탐산나트륨)

본 사례는 중국산 글루탐산을 말레이시아로 반입하여 글루탐산나트륨(MSG)으로 가공·생산한 후, 이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산 글루탐산나트륨으로 신고한 행위가 반덤핑 관세<sup>26)</sup>를 회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다.

2024년 4월, CBP는 해당 말레이시아산 글루탐산나트륨을 수입하는 미국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회피조사를 개시하였다. 회피조사 결과, CBP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한다고 판단하여 통관 보류, 관세 정산(liquidation) 정지 등 중간 조치(interim measure)를 부과하였다.

중간 조치 이후, CBP는 중국산 글루탐산을 말레이시아에서 가공·생산한 글루탐산 나트륨이 반덤핑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지 못하여 상무부에 대상물품조사(CMR)를 신청하고 범위판정을 요청하였다.

상무부는 관련 규정(19 CFR § 351.227)에 근거하여 CBP의 대상물품조사(CMR) 신청에

26) 과거 반덤핑 관세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물품은 중국산 글루탐산나트륨(MSG)이다.

따른 범위판정을 기존 진행하던 우회조사와 함께 처리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sup>27)</sup>, 이에 따라 범위판정 절차를 우회조사에 통합하여 진행하였다.

상무부는 우회조사 진행 과정에서 8개 기업에게 우회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1개 기업이 요청에 응답하였다. 응답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 7곳에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를 적용하였다.

불리한 가용정보(AFA)란, 조사 대상 기업이 CBP의 회피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CBP가 회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집한 사실 자료(facts available)에 해당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추론(inference)을 적용하여 도출한 정보<sup>28)</sup>.

이후 상무부의 협조 요청에 응답한 1개 기업에게 현장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현장 검증을 거절하였고, 이에 상무부는 모든 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우회 판정을 내렸다<sup>29)</sup>.

상무부는 우회조사와 최종 판정을 통하여 CBP에 중국산 글루탐산을 말레이시아에서 가공·생산한 글루탐산나트륨이 반덤핑 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통보하였고<sup>30)</sup>, CBP는 회피 판정 기한을 60일 연장하여 상무부의 우회 판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회피 판정을 내렸다<sup>31)</sup>.

[표 4] EAPA 7950(글루탐산나트륨) 사례 개요

항목	내용
회피조사 사건번호	EAPA 7950
반덤핑 사건번호	A-570-992

27) Monosodium Glutamat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ice of Intent To Address Covered Merchandise Referral in Ongoing Circumvention Inquiry(FR Doc No : 2025-00560, 90 FR 3183)

28) 19 CFR § 165.6 (a)-(c)

29) Monosodium Glutamate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FR Doc No : 2025-09693, 90 FR 22702)

30) EAPA Cons. Case 7950(Notice of Determination as to Evasion) 11p.

31) EAPA Cons. Case 7950(Notice of Determination as to Evasion) 각주 87, 88

항목	내용
반덤핑 관세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루탐산나트륨(MSG) 전체가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대상이며, 물리적인 형태 불문(일수화물·무수물<sup>32)</sup>, 용액, 건조 분말, 미완성 형태(슬러리 등))</li> <li>• 다른 제품과 혼합·용해된 MSG도 혼합물 중량 기준으로 15% 이상 함유 시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범위에 포함<sup>33)</sup></li> <li>• 완제품의 원산지과 관련된 부분은 명시하지 않음</li> </ul>
조사대상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산으로 수입된 글루탐산나트륨(MSG)</li> <li>• (혼합·용해된 글루탐산나트륨도 혼합물 중량 기준으로 15% 이상 함유 기준)</li> </ul>
HS 코드	2922.42.1000 <sup>34)</sup>
조사 타임 라인	24.01.31. 제보자, 상무부 우회조사 신청
	24.03.25. 제보자, CBP EAPA 회피조사 신청
	24.04.01. CBP, EAPA 회피조사 개시
	24.05.15. 상무부, 우회조사 개시
	24.07.01. CBP, EAPA 회피조사 중간 조치 부과
	24.12.18. CBP, 상무부에 대상물품조사(CMR) 신청 및 범위판정 요청
	25.01.07. 상무부, 범위판정을 우회조사와 통합하겠다고 공표함
	25.02.21. 상무부, 우회 예비 판정
	25.05.22. 상무부, 최종 우회로 판정한 후 CBP에 범위판정 결과 통보
	25.05.30. CBP, 회피 판정 기한 60일 연장
	25.09.15. CBP, 최종 회피 판정

자료 : 미국 상무부 ACCESS(access.trade.gov), CBP EAPA(cbp.gov/trade/eapa)

## 5. 마무리하며

본 고에서는 우회·회피조사 및 범위판정의 개념, 관련 법령, 조사 내용 및 절차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앞서 두 사례(EAPA 7184, EAPA 7950)를 분석하여 우회·회피조사 및 범위판정의 연계 구조 등을 확인하였다.

32) 일수화물(C<sub>5</sub>H<sub>9</sub>NO<sub>2</sub>Na-H<sub>2</sub>O) : 화합물의 분자 구조에 물 분자가 1개 결합해 있는 상태의 물질  
 무수물 (C<sub>5</sub>H<sub>9</sub>NO<sub>2</sub>Na) : 화합물에서 물 분자가 제외된 상태의 물질

33) 글루탐산나트륨과 혼합될 수 있는 제품 : 소금, 설탕, 전분, 말토덱스트린 등 포함(이에 한정되지않음)

34) 그외 2922.42.50.00, 2103.90.72.00, 2103.90.74.00, 2103.90.78.00, 2103.90.80.00 및 2103.90.90.91 등으로 반입될 수 있다.

두 사례 모두 CBP 회피조사로 시작하였으나, CBP의 대상물품조사(CMR) 신청에 따른 상무부의 범위판정, 범위판정과 우회조사간 통합 과정을 거쳐 회피가 판정되었으므로, 상무부-CBP 간 상호 연계하여 반덤핑·상계관세 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기업이 통관단계에서 CBP의 회피조사뿐만 아니라 범위판정과 우회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대상 국가의 원재료 및 우회 수출 대응 관련 자료들을 조기에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자사 공급망 내 협력사들을 상시 점검하여 현장 검증 대응 사전 준비 등 협력사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우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예방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주요국의 우회덤핑 사례·조사 동향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모니터링하고<sup>35)</sup>, 기업에 대한 미국 우회덤핑 관련 조사 대응 자료 작성(매뉴얼) 지원 및 전문가 자문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5)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은 2026년 5월부터 YES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에 미국 관세정책 대응 지원을 위한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와 우회·회피조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관세청 보도자료, 26.05.19)



#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 기준의 적용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



**박현혁**  
한국원산지정보원  
신통장규제팀 전문연구원

## 1. 들어가며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은 대미 수출 기업의 원산지 관리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 기업의 원산지 관리는 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특혜 원산지 충족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제301조 관세 조치, 무역구제조치 등을 활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확대되면서, 비특혜 원산지가 기업의 비용과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 부담은 품목분류 결과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제301조와 같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의 대상 국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공급망 운영, 가격 결정, 계약 이행 및 통관 안정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실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이 FTA 원산지 기준처럼 명확한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특정 통상정책의 적용을 위해 개별 법령에 규정된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의 관세정책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주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성과 용도가 어느 국가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나, 그 기준이 명확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출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제도의 구조와 실질적 변형 기준의 개념을 살펴보고,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 사전심사 결정문에 나타난 판정 경향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실무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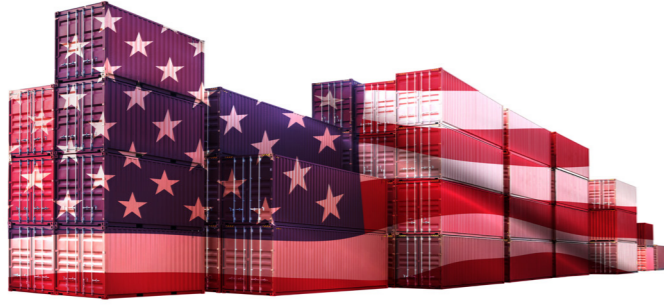
## 2. 미국의 원산지 제도: 이중 원산지의 함정

FTA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관리하는 데 익숙한 대다수의 수출기업에게 비특혜 원산지는 자칫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서로 상이한 목적과 판단 기준으로 오랫동안 운용돼 온 제도이며, 비특혜 원산지의 이해는 이러한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미국의 특혜·비특혜 원산지 제도 비교]

구분	특혜 원산지	비특혜 원산지
목적	FTA 또는 특혜 관세 제도에 따른 관세 혜택 부여	원산지 표시, 무역구제조치, 제301조 조치 등 통상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
판단 기준	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협정 또는 제도별 일정 기준 적용	주로 실질적 변형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
주요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 FTA, USMCA 등 자유무역협정</li> <li>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Trade Act of 1974, Title V/19 U.S.C. § 2461) 등 특혜 관세 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물품 원산지표시(19 U.S.C. § 1304)</li> <li>USMCA 원산지표시(19 C.F.R. Part 102)</li> <li>정부조달물품(19 U.S.C. §§ 2511-2518) 등</li> </ul>

출처: 한국원산지정보원(2026),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심층분석 보고서.



특혜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협정문이나 관련 원산지 규정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이 협정에서 정한 일정 수준의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특정 가공공정이 수행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반면 비특혜 원산지는 관세 상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원산지 표시, 제301조 관세 조치, 무역구제조치, 정부조달 등 특정 통상정책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각 정책의 목적과 근거 법령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관련 법령과 판정 기준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법령]**

구분	법령	기준
일반 비특혜 원산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등)	• 19 U.S.C. § 1304 • 19 C.F.R. § 134.1(b)	실질적 변형
섬유 및 의류	• 19 U.S.C. § 3592 • 19 C.F.R. § 102.21	일반 규칙 + 품목별 일정 기준
USMCA 원산지 표시	• 19 C.F.R. Part 102	일반 규칙 + 품목별 일정 기준
정부조달 적용 물품	• 19 U.S.C. §§ 2511-2518 • 19 C.F.R. Part 177 Subpart B	실질적 변형

출처: 한국원산지정보원(2026),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심층분석 보고서.

이중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준은 실질적 변형 기준이다. 19 C.F.R. § 134.1(b)는 미국에 반입되는 외국산 물품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추가 작업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려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원산지 표시분 아니라, 제301조 관세 조치<sup>1)</sup>와

1) 제301조 관세 조치를 위한 원산지 판단에 실질적 변형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CBP는 원산지 표시 판단에 사용되는 실질적 변형 법리를 제301조에 실무상 준용하고 있으며, 제201조와 제232조 등 특정 통상 조치의 원산지 판단에서도 같은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같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정책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우리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것은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산지는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근거 법령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미 FTA 기준상 한국산으로 인정된 제품이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서는 다른 국가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미국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검토할 때 FTA 활용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사 제품의 공급망과 제조공정이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인 실질적 변형에 따라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참고 한-미 FTA에 따른 특혜 원산지는 한국산, 비특혜는 중국산?! -이중 원산지의 함정-**

① 물품명: 양념 배추김치  
 ② CBP 사전심사 결정문 번호: NY N350768 (2025.07.28.)  
 ③ 품목정보

HS Code	제2005.99호
한국 기본세율	20%
미국 기본세율	0~14.9% or 0.8¢/kg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④ 사실관계

제조공정	• 중국산 절인 배추, 고춧가루, 냉동 마늘을 한국으로 수입 • 중국 및 한국산 재료를 버무려 양념 배추김치 완성
------	--

⑤ 판정 결과 및 사유

특혜 (한국산)	비원산지 재료인 중국산 배추, 고춧가루, 냉동 마늘은 모두 제20류 이외의 다른 류에 분류되고 제의 세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판정 가능
비특혜 (중국산)	중국산 배추는 한국으로 수입될 시점에도 배추였고 한국에서 가공을 거친 이후에도 여전히 배추이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 출처: Origin Case Vol.5(Case.10)

### 3. 미국 실질적 변형의 이해

#### 1) 실질적 변형의 개념

실질적 변형에 대해 19 C.F.R. § 134.1(b)은 “실질적 변형이 발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할 뿐,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해당 기준은 법령상 정형화된 판단 공식이라기보다, 미국 법원이 축적해 온 판례 및 이를 기준으로 CBP가 결정한 결정례를 통해 발전해 온 법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판례와 결정례에서 실질적 변형 여부는 일반적으로 **물품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명칭(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상이한 상업적 물품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다만 명칭·특성·용도의 변화는 판단을 위한 기본 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결론은 물품의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상황을 검토하여 도출된다.

#### 2) 명칭·특성·용도 변화

**명칭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보조적 요소로 평가된다. 수입 당시 물품과 후속 공정을 거친 물품의 명칭이 달라졌다는 사정은 참고될 수 있으나, 명칭의 변화만으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성의 변화**는 보다 중요하게 검토된다. 여기서 특성이란 물품의 구조, 재질, 기능, 성능, 형태, 본질적 역할 등 해당 물품을 그 물품답게 만드는 본질적 요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공정을 거친 뒤 투입된 부품·재료의 본질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용도의 변화**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수입 시점에 이미 특정 부품·재료가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될 용도로 특정되어 있었다면 실질적 변형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제조공정을 통해 새로운 기능과 상업적 용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 3) 기타 고려 요소

미국 법원에 따르면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명칭, 특성 및 용도의 변화 기준은 총체적 상황(totality of evidence)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최종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투입된 재료·부품의 성격, 국가별 제조공정의 복잡성, 발생한 부가가치, 비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안에 따라 세번변경 여부, 설계·개발에 투입된 자원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순 조립, 포장, 검사, 마감 작업 등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복잡하거나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제조과정, 화학적 성질 변화 등은 긍정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단 하나의 요소만으로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총체적 상황에 따라 최종제품의 고유한 특성과 용도가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형성되었는지에 있다.

#### 4) CBP의 해석 및 판정 경향: 총체적 상황 판단의 중요성

실질적 변형의 기본 개념은 미국 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되었고, CBP는 이를 실제 통관 과정에서 개별 물품의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CBP 사전심사 결정문을 보면, 명칭·특성·용도 변화라는 일반 원칙을 준용하면서도 실제 설명에서는 완제품의 핵심 기능을 형성하는 부품이나 공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일부 전기·전자 제품에서는 PCBA, 시계에서는

무브먼트, 태양광 패널에서는 셀, 브레이크 패드에서는 마찰재 등이 반복적으로 핵심 구성요소로 언급된다.<sup>2)</sup>

**참고** CBP의 핵심 구성요소 기반 판정 사례 예시

▶ **물품명:** 노트북

▶ **CBP 사전심사 결정문 번호:** NY N346570(2025.03.18.)

▶ **제조과정**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적회로, 커패시터, 다이오드 등의 부품으로 마더보드 PCBA 제작</li> <li>베트남산 및 말레이시아산 프로세서, 대만산 또는 한국산 메모리, 대만산 SSD와 결합</li> <li>기능시험</li> <li>마더보드 서버 어셈블리 중국으로 수출</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산 LCD 디스플레이, 팬, 키보드, 카메라, 터치패드, 안테나 등의 부품 및 각종 서버 어셈블리와 결합하여 최종제품 생산</li> </ul>

▶ **판정 결과 및 사유**

• 마더보드 PCBA는 조립체 내에서 프로세서 CPU와 메모리의 상호연결을 수용하고 제어하며, 자동자료처리기계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Basic Input/Output System, 이하 BIOS)을 포함하는 구성품이므로 최종제품의 기능을 확립하는 핵심 구성요소이며, 중국에서 수행되는 공정은 PCBA를 새롭고 상이한 물품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베트남임

\* 출처: 한국원산지정보원(2026), 미국 원산지 판정사례 심층분석 보고서.

그러나 이러한 핵심 구성요소 중심의 설명은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 방식이지, 그 자체가 별도의 독립된 기준은 아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 변형은



2) CBP가 특정 물품에 대해 핵심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판단한 물품에 대해서는 2026년 한국원산지정보원이 발간한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심층분석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최종제품의 본질이 형성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제 CBP가 완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형성하는 핵심 부품이나 핵심 공정을 중점으로 실질적 변형을 판단했더라도, 법원이 정립한 실질적 변형 개념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Cyber Power Systems (USA), Inc. v. United States(2023) 사건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 해당 사건에서 CIT는 “essence-based approach”, 즉 특정 핵심 구성요소가 완제품의 본질을 부여한다는 방식의 접근을 실질적 변형 판단의 독립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부품의 기능적 중요성분 아니라 제조공정의 복잡성, 조립 이후 기능 통합의 정도, 최종제품으로서의 상업적 정체성 형성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참고** CIT의 Cyber Power Systems 사례

▶ **사건명:** Cyber Power Systems (USA), Inc. v. United States(2023)

▶ **대상물품:** 무정전전원장치(UPS) 5종 및 과전압보호기(SVP) 1종

▶ **주요 사실관계**

중국	• PCBA 등 일부 구성부품 생산
필리핀	• 부품 조립, 배선 및 하우징 결합, 기능 통합, 검사 등을 통해 최종 완제품 생산

▶ **Cyber Power의 주장**

• 중국산 PCBA는 UPS 장치의 핵심 기능인 비상시 에너지 공급 기능을 단독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필리핀에서의 제조공정이 중국산 부품을 새로운 명칭, 특성 및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형시킴

▶ **CBP의 판단**

• 중국산 PCBA가 제품의 본질을 결정하는 핵심 구성요소이며, 필리핀 공정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6개 모델 모두 중국을 원산지로 판단

▶ **법원의 최종 판결**

• 특정 핵심 부품의 중요성만으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 실질적 변형 여부는 제조과정 전체, 조립의 복잡성, 최종제품의 상업적 정체성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이에 따라 6개 모델 중 1개 모델의 원산지는 필리핀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5개 모델은 원고의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중국을 최종 원산지로 판단함

따라서 CBP 결정문에서 특정 부품이나 공정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가 곧 완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기업이 CBP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미국 수입 단계에서 원산지 판단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핵심

부품의 원산지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제조과정 전체가 실질적 변형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 국가에서 명칭·특성·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핵심 기능이 형성되었는지, 조립·가공 공정이 단순 작업을 넘어 새로운 상업적 물품을 형성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총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4. 최근 CBP 사전심사 결정문 발행 동향과 실질적 변형 검토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 변형의 판정에서는 CBP의 실무상 판단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CBP 사전심사 결정문은 실제 통관 단계에서 CBP가 어떤 사실관계와 제조공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단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결정문에는 신청인이 제시한 공급망 구조, 국가별 제조과정, CBP의 판단 사유<sup>3)</sup>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유사 물품의 원산지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실무적 가치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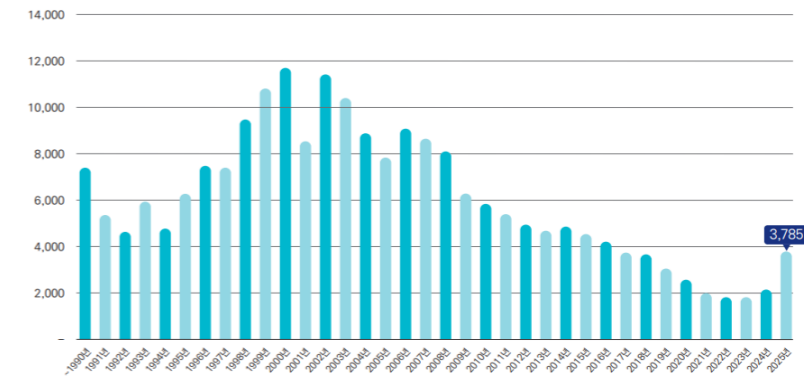
CBP는 『19 C.F.R. Part 177』에 따라 신청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품목분류, 원산지, 원산지 표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사전 판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발급된 결정문은 CROSS(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sup>4)</su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이 2026년 발간한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CBP CROSS 사이트에 공개된 전체 사전심사 결정문은 1966년부터 2025년까지 총 219,604건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 발행 건수를 보면 2000년 11,746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5년에는 총 3,785건이 발행되어 전년 대비 약 7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와 함께 사전심사 수요가 다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CBP의 사전심사 결정문 번호는 NY와 HQ로 분류되는데, HQ 사례가 사실관계 및 CBP의 판단 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4) URL: <https://rulings.cbp.gov/home>

[연도별 전체 사전심사 결정문 발행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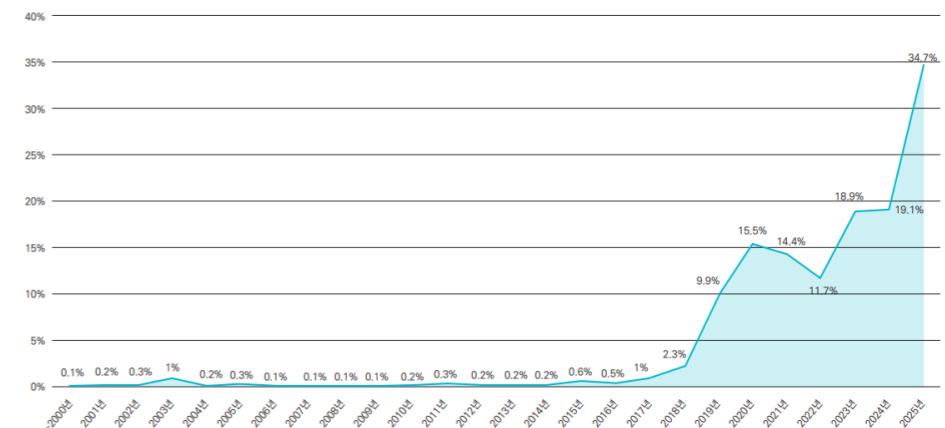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7,373	5,358	4,656	5,915	4,783	6,242	7,477	7,359	9,494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0,808	11,746	8,514	11,461	10,468	8,907	7,818	9,129	8,665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074	6,278	5,825	5,427	4,935	4,642	4,873	4,540	4,204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765	3,676	3,039	2,578	1,952	1,849	1,835	2,154	3,785

출처: 한국원산지정보원(2026),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심층분석 보고서」.

원산지 관련 결정문<sup>5)</sup>의 비중도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까지 전체 결정문 가운데 원산지 관련 사안의 비중은 1% 미만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약 35%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연도별 사전심사 결정문에서 원산지가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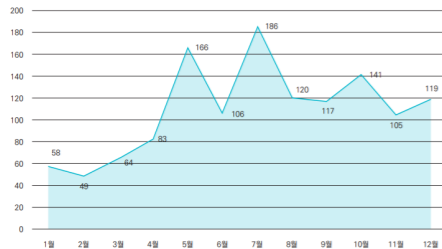
주: 연도별 원산지 결정문 수(다른 사안과 복수 신청 건 포함)/연도별 전체 결정문 수

출처: 한국원산지정보원(2026),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심층분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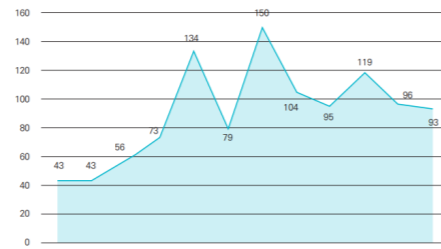
5) 원산지 관련 사전심사 결정문 통계는 실질적 변형 검토, FTA 특혜 원산지 검토, 섬유·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토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를 의미한다.

특히 2025년 CBP CROSS에 공개된 원산지 관련 사전심사 결정문 총 1,314건 중 실질적 변형 기준이 직접적으로 검토된 결정문은 1,085건으로 전체 원산지 관련 결정문의 약 83%를 차지하였다. 이는 현재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에서 실질적 변형 기준이 사실상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월별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문 통계]



[2025년 월별 실질적 변형 관련 사전심사 결정문 통계]



출처: 한국원산지정보원(2026),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심층분석 보고서」.

한편 2025년 실질적 변형 기준이 직접 검토된 1,085건의 사전심사 결정문을 대상으로 공급망 참여국과 최종 수출국을 분석한 결과, 중국과 관련된 사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실질적 변형 기준이 단순한 원산지 표시 판단을 넘어, 제301조 관세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관세정책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산 물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담이 지속되면서, 중국산 부품·원재료가 사용되거나 중국에서 특정 공정이 일어난 경우, 실질적 변형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공급망 참여국 및 수출국]

공급망 참여국*		최종 수출국**	
중국	900	중국	424
베트남	290	태국	169
태국	242	베트남	141
미국	230	인도	108
인도	152	한국	45
한국	120	캄보디아	36
대만	98	말레이시아	35
말레이시아	90	대만	19
인도네시아	69	멕시코	19
캄보디아	56	인도네시아	18

\* 각 결정문에서 최종제품 생산을 위해 원부자재를 공급하거나 특정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

\*\* 미국으로의 최종 수출이 이루어진 국가

출처: 한국원산지정보원(2026),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심층분석 보고서」.

## 5. 미국 비특혜 원산지 리스크 점검을 위한 기업 유의사항

### 1) 동일·유사 품목도 사실관계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실질적 변형 판단은 개별 물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외형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이라도 원재료의 원산지, 국가별 제조공정 등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 CBP 결정문을 단순한 “결론 사례”로 활용하기보다, 그 결론이 어떤 사실관계와 판단 논리에 따라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결정문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사실관계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사 제품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 CBP 사전심사 결정문 검토 가이드(예시)

Step 1 선행 결정문 검색	목적	• 자사 제품과 유사한 선행 사례를 찾아 참고	
	방법	• CBP CROSS 사이트에서 물품명, HS Code, 핵심 재료 등 키워드 검색	
Step 2 판정 논리 분석	목적	• CBP가 해당 사례에서 핵심 결정 요인으로 본 요소 파악	
	분석 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질적 변형을 인정/부정한 근거는 무엇인가?</li> <li>• 어떤 재료나 공정을 "핵심"으로 보았는가?</li> <li>• "단순"하다고 평가한 작업은 무엇인가?</li> <li>• 본질적 특성의 변화를 어떻게 판단했는가?</li> </ul>	
Step 3 자사 상황과 비교	비교 매트릭스 작성 (예시)		
	비교 항목	유사 사례      자사 제품      차이의 영향	
	주요 원재료		
	핵심 공정		
	제조 국가		
	공정의 복잡성 부가가치 최종 물품 용도		
Step 4 판정 신뢰도 및 대응 시나리오 확정	사례 신뢰도 평가 및 대응 시나리오 (예시)		
	신뢰도	판정 기준      대응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사례가 많고, 판정 논리가 명확하며, 자사와 조건이 거의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적으로 원산지 판단 진행</li> <li>• 사후 검증 대비 자료 준비</li> </ul>
	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사례가 있으나 일부 조건이 다르거나, 판정 논리에 해석의 여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자문 고려</li> <li>• 추가 유사 사례 조사</li> <li>• 보수적 접근 권장</li> </ul>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사례가 없거나, 사례 간 판정 결과가 엇갈리거나, 자사 제품이 회색지대에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심사 신청 적극 검토</li> <li>• 전문가 자문 검토 필수</li> <li>• 대안 시나리오 마련 필요</li> </ul>	

\* 출처: 한국원산지정보원(2026), 「Origin Case Vol.11」.



## 2) 실질적 변형을 입증할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실질적 변형 판단은 법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실관계 입증의 문제이다. 특히 최종제품의 본질적 특성과 용도가 어느 국가의 공정 또는 재료·부품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공정 설명자료(생산 일정, 제조공정 흐름도, 작업지시서, 생산기록 등), BOM, 원가구성표, 제품사양서, 시험성적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원산지 판단의 사전 검토본 아니라, 추후 CBP의 자료 요청이나 검증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판단의 근거를 소명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3) CBP 사전심사는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sup>6)</sup>

유사 사례가 충분하지 않거나, 원산지 판단에 따라 관세 부담 차이가 큰 경우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CBP 사전심사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사전심사는 신청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CBP가 공식 판단을 제시하는 제도이므로, 원산지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고 통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핵심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신청인이 기대한 것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며, 그 결과 예기치 못한 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번 CBP가 발행한 결정 건에 대해서는 추후 실제 제조공정이나 부품 조달 구조가 달라졌더라도 그 변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기존과 다른 결론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6) CBP 사전심사 신청에 대해서는 2025년 한국원산지정보원이 발간한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을 참고하기 바란다.

따라서, 사전심사는 유사 결정문 검토, 사실관계 정리, 증빙자료 확보 등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신중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거나, 제조공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어느 요소가 원산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신청 여부와 신청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6. 맺음말

실질적 변형을 기준으로 한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단은 최종제품의 명칭·특성·용도가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 미국의 여러 통상정책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 변형 기준이 원산지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FTA 특혜 원산지 충족 여부와 별도로 비특혜 원산지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기업은 품목별 제조공정, 부품 원산지, 원가 및 부가가치 구조, 각 재료와 제품의 기능·용도 변화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유사한 CBP 사전심사 결정문을 참고하되, 결론만 인용하기보다 자사 제품과의 사실관계 차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는 미국 통관 과정에서 원산지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관세 부담과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